

현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Rev. No 일 자 사 유 주 관 팀 비 고
0 2022. 05. 11 최 초 제 정 안전팀

결 재	구분	작성자	검 토 자				승인자
	성명	(안전) 박준수 책임매니저	(공사) 이연덕 책임매니저	(공사) 유성희 책임매니저	(품질) 조현수 책임매니저	(품질) 문상국 책임매니저	(현장소장) 곽현민 부장
	일자	2022.05.11.	2022.05.12.	2022.05.12.	2022.05.12.	2022.05.12.	2022.05.12.
	서명						

근로자 대표 : (서명)



무 창 포 항 개 발 사 업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업무주관 부서

제5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제6조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

제7조 안전·보건표지

제8조 순회점검

제9조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10조 안전·보건 정보 제공

제11조 위생시설의 설치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12조 조직구성의 원칙

제13조 조직의 구성

제14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제17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8조 안전·보건 관계자의 선임

제19조 작업지휘자

제20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21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제22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23조 교육훈련
- 제24조 채용 시 교육
- 제25조 정기교육
- 제26조 관리감독자교육
- 제27조 특별안전·보건교육
-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제2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제30조 교육계획의 수립
- 제31조 책 임
- 제32조 교육의 기록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제33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34조 안전·보건진단
- 제35조 방호조치
- 제36조 성능유지
- 제37조 준수사항
- 제38조 안전검사
- 제39조 검사결과 조치
- 제40조 검사계획
- 제41조 안전수칙
- 제42조 안전조치
- 제43조 위험물질의 보관
- 제44조 작업의 중지
- 제45조 긴급위난 시 조치
- 제46조 안전표지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7조 작업환경측정

제48조 작업환경측정 방법

제49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50조 건강진단

제51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제52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제53조 보건수칙

제54조 보호구

제55조 작업모 및 작업복

제56조 보건기준 등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57조 재해발생 시 절차

제58조 긴급조치

제59조 비상연락망

제60조 사고조사 및 보고

제61조 재해분석 대책수립

제62조 재해 기록 관리

제7장 위험성평가

제63조 위험성평가

제64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기록 보존

제65조 위험성평가의 시기

제8장 보 칙

제66조 무재해운동

제67조 포상 및 징계상신

제68조 포상상신

제69조 징계요구대상자

제70조 문서의 보존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심의의결

1. 현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2. 본사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3. 현장 안전,보건,환경 방침
4. 업무분장표

별 칙

1. 안전, 보건교육실시 세부 추진계획
2. 작업장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3. 작업장 보건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보건 관리규정

당 현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2년 05월 11일 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세부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세부내용(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나.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양 무창포항 개발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직원 및 근로자,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안전보건 관계자의 직무수칙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원 및 근로자,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하며,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회사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 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현장"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보건관리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42조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이라 함은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단, 산업재해는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2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를 말하며, 업무로 인한 질병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여 승인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11. "사고"라 함은 불안정한 상태 또는 불안정한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12. "재해"라 함은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13. "중대재해"라 함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14.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5.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4조 【업무주관부서】

1. 안전보건 관리의 주체는 각 협력사의 현장소장이며, (주)한양 건축,토목, 전기,설비 등 각 공사관리부서 관리감독자가 총괄관리하며, (주)한양 안전/보건관리자는 지도/조언 업무를 진행한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관 관리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종하고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1.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2. 각 업무담당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회사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소장 및 전직원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에 의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연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현장에 소속된 전 직원 및 근로자는 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7조 【안전·보건표지】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이하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규칙

별표6과 같고, 그 용도, 설치·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규칙 별표7과 같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다.

제8조 【순회점검】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법 제64조1항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2. 하도급 현장소장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제6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의 2에 따라 2개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도급사 (주)한양 현장소장)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각 하도급사 현장소장)
3. 원도급사 (주)한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직영 근로자 대표 1인
4. 각 하도급사 근로자대표 1인

제10조 【안전·보건 정보 제공】 법 제6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1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당 하도급의 현장소장 또는 관리자에게 제공(전자문서에 의한 제공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제11조 【위생시설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6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상기 각 시설등의 전체 공통부문은 원도급사에서 현장 특성에 맞게 설치, 관리하며, 각 하도급사 개별 필요시 관련 업체,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관리진행.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12조 【조직구성의 원칙】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이하 "안전보건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직구성】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사 (주)한양 현장소장이 된다.
2.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유자격자를 임명한다.
3.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유자격자를 임명한다.
4. 안전점검,교육,조치 등 재해예방관리 및 조치는 각 공사부서 관리감독자가 관장하고 사후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지도,조언 및 총괄 관장한다.

5.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의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4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사용 여부 확인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1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 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안전·보건 관계자의 선임】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을 지정한다.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작업지휘자】

1.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경험이 많은 자(숙련공)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자의 지휘 하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화물자동차 등)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 100KG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의 인양 운반 하역 작업 및 설치(텔레스코핑 포함)·해체하는 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흠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맨홀작업 등 질식재해위험 작업
- 갈탄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제20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1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법 제75조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2. 사용자위원
 -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나. 안전관리자 1명
 -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1.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3장 안전 · 보건교육

제23조 【교육훈련】

작업방법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채용 시 교육】

채용시 1시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작업장의 변경에 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근로자의 작업에 임하는 자세(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 등)

나. 현장의 개요 및 위험개소, 위험작업, 현재공정 등 현황설명

다.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취급시기

라.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마.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바.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아.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내용

차.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 【정기교육】

월1회 이상 2시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나.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다.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바. 사고사례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내용

아.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26조 【관리감독자교육】

현장내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 나. 작업안전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근로자 안전교육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 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마. 재해발생 및 이상 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 바.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요령에 관한 사항
- 사. 제품,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아.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제27조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규정 제2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5와 같다.

- 1) 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2) 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3) 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

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작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본 규정 따른 특별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당해 현장에 채용되기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토록 한다.

제2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제95조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2)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제30조 【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 관리자는 매년 연초에 당해 연도의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책임】

전직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32조 【교육의 기록】

교육실시 후 신규채용자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관리 감독자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 현장 준공시까지 보관 하며, 현장 준공시는 문서화(PDF파일)하여 본사 안전보건 부서로 이관토록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3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1.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1월(연초)중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직원에게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안전·보건진단】

1. 법 제4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사협의체 심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1항에 의거 작성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 【방호조치】

1.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영 별표20에 따른 것들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할 것

제36조 【성능유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40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관리책임자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37조 【준수사항】

1. 근로자는 제40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안전검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검사결과 조치】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사용을 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한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며 보수를 한후 안전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중지 표찰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제40조 【검사계획】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반입시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제41조 【안전수칙】

현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직원 및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안전조치】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지침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해 법 제83조 안전인증기준을 기초로 하여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

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하는 때
-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필요한 때
- 작업자의 비적격성
- 안전 위반행위
- 기기의 결손여부
- 작업장 안전상태
- 부적당한 작업상태 등

제43조 【위험물질의 보관】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 팀장을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해야 한다.
2. 1항의 위험물질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 【작업의 중지】

1. 법 제51 및 52조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2. 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3. 모든 작업자는 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 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긴급위난시 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안전표지】

현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7조 【작업환경측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18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 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업 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 【작업환경측정 방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실시 할 것
3. 본 규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그 밖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49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규칙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 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화학 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②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50조 【건강진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51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 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MSDS) 작성·비치】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물리·화학적 특성
 - 2) 독성에 관한 정보
 - 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
 - 4) 응급조치 요령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3조 【보건수칙】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필요한 수칙(이하 “보건수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하고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정된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 【보호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 관리감독자는 과거의 보호구 소모 이력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보호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 구매 시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 모든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보호구 사용을 금한다.
 -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변경,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작업모 및 작업복】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는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56조 【보건기준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는 제1항의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 보건수칙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하며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7조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직속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8조 【긴급조치】

1.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건강관리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틀 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9조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60조 【재해조사 및 보고】

1.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안전관리자는 재해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한 사항
3. 보건관리자는 직업병 발생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재해 조사는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5.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치료,보상 실시

제61조 【재해분석 대책수립】

1. 안전/보건관리자는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관련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토록 지도,조언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다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도,조언 한다.
3. 월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공사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게시

하여 모든 직원 및 근로자가 알도록 한다.

제62조 【재해 기록 관리】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作成)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63조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사업주는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 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 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64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기록의 보존】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사업주는 본 규정 제91조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본 규정 제93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65조 【위험성평가의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8장 보 칙

제54조 【무재해운동】

1. 안전관리자는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운동을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한다.
3.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개시신고 및 인증서 발급업무 변경으로 2018년부터 신규 개시신고 업무가 삭제되고 2018년도까지 인증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사후 관련업무는 당사 본사의 방침에 따라 운영 또는 폐지한다.

제67조 【포상 및 징계상신】

안전/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제68조 【포상상신】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대상자 중에서 상신한다.

1. 안전 및 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 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보건 업무(작업진행)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69조 【징계요구대상자】

징계요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 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70조 【문서의 보존】

안전보건 관련 문서는 현장 준공 시까지 현장에 보관하며, 현장 준공 시는 문서화(PDF파일)하여 본사 안전파트로 이관토록 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 04.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의결】 본 규정은 2021. 05월 노사협의체 회의에서 심의,의결
(심의의결 : 참석자 8명 중 8명 전원찬성으로 의결 함)

1. 현장 안전관리조직도
2. 본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3. 본사 2022 안전,보건 목표
3. 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1. 현장 안전관리조직도

안 전 관 리 조 직 도



2. 본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

(주)한양은 사회기여, 인류공헌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생명존중 안전문화를 구축하고자 아래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
2.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
3. 인재육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 선진화
4. 현장과 협력사의 자율 안전보건 활동 보장

상기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따라 제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다짐한다.

대표이사 부회장 김 형 일



2. 본사 2022 안전,보건 목표

2022 안전 · 보건 목표

“중대재해 ZERO”

1.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 규정과 절차 준수 문화 조성
3.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적용
4. 임직원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활동 적극참여

근로 임직원은 상기 안전보건 목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한다.

대표이사 부회장 김 형 일



3. 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현장 안전보건방침

1. 기본과 원칙 준수
2. 유해 · 위험요인 제거
3.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현장 안전보건목표

1. 중대산업재해 ZERO
2. 건설장비사고 ZERO
3. 5대 재래형 사고 ZERO

2022.01.01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소장 **곽연민**

4. 업무분장표

구 분	업무분장		서명
현장소장 곽현민 부장	산안법관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무	서명
	경영시스템	- 현장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운영 총괄	
	매뉴얼	- 현장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의 승인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서의 승인 (의견기입)	
	안전방침/목표	- 안전방침 및 목표 수립 및 예산집행 승인	
	목표추진계획	-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활동시행 점검표 승인	
	협의체회의	- 노사협의체회의의 주관 - 공중 및 협력사간 간섭사항 및 의견 조율 - 중점관리 대상작업 개선방안 확정 - 금회 안전에 대한 총평 - 안전보건협의체회의록 승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승인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교육 적정실시여부 확인 및 교육보고서 승인	
	안전보건점검	- 1회이상/2일 안전보건점검 실시 및 사업주 순회점검일지 작성 - 일일안전보건점검일지 승인 - 1회/2월 도급사업합동점검 실시	
	안전보건활동	- 본사안전보건활동 제도 실시의 현장적용 추진	
	비상사태발생시 업무	- 비상대책 위원장의 업무 (비상대책 총괄 지휘)	
	기타	- 본사안전보건방침,규정,지침 직원 전파 - 종량울,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승인 - 안전보건관련 업무 검토 및 승인(품의서,소모품)	

구 분	업무분장		서명
공사팀장 유성희 책임매니저	산안법관련	- 관리감독자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참조)	(서명)
	경영시스템	- 현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참여 - 현장 소장 부재 시 소장 업무 대행	
	매뉴얼	- 현장안전보건경영매뉴얼 검토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검토(feed back/의견기입) - 비정상 작업 발생시 위험성평가 검토	
	작업계획	-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재	
	비상사태	- 방침 및 목표를 공유하고 예산집행 검토	
	목표추진계획	-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활동시행	
	협의체회의	- 협의체회의 진행 - 중점관리 대상작업 추가 보완 및 개선 사항 발표 - 의견협의 및 조율에 참여(개선대책의 집중화 및 구체화) - 전달사항 발표	
	안전보건교육	- 업무분장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실시(feed back/추가위험요인 발굴) - 현장소장 부재 시 일일안전보건점검일지 승인	
	안전보건활동	- 안전조회 주관 - 공중 TBM 참석 - 본사안전보건활동 제도 실시에 참여	
	비상사태발생시 업무	- 복구반 반장 > 장비 및 자재 투입	
	기타	- 현장공사용 작업공간 업체별 배분 및 관리 - 안전보건 관련 업무 검토 및 승인 - 휴일 등 현장소장 부재기간 현장소장 업무대행	

구 분	업무분장		서명
<p style="text-align: center;">품질팀 조현수 책임매니저</p>	<p style="text-align: center;">산안법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참조) 	(서명)
	<p style="text-align: center;">경영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참여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활동시행여부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체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시 의견협의 및 조율에 참여 - 예산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보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등 교육 참석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보건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상 포함된 구성원 일일안전보건점검 실시 - 추가위험요인 등록/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출력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근로자 출퇴근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보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사무실 운영관리(화재예방) - 산업안전관리비 검토 - 본사안전보건활동 제도 실시에 참여 - 안전조회 주관 및 TBM참석 	
	<p style="text-align: center;">비상사태발생시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반 >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 가동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등 팀장 부재기간 팀장 업무대행 		

구 분	업무분장		서명
안전팀 박준수 책임매니저	산안법관련	- 안전관리자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참조)	(서명)
	경영시스템	- 현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관리(기획자 역할) 전직원/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목표	- 현장 안전보건목표의 작성	
	공유.게시	- 방침 및 목표를 공유	
	목표추진계획	-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활동시행여부 확인 - 목표달성 성과측정 추진담당업무 : 성과측정 자가 진단 및 Feedback 실시(분기1회)	
	매뉴얼	- 현장안전보건경영매뉴얼 검토	
	위험성평가	- 검토(feed back/의견기입/등급조정) 위험성평가 검토 - 한양(직영) 안전시설 위험성평가 검토 - 비정상 작업 발생시 위험성평가 협의/검토 - 위험성 평가 기법 교육	
	협의체회의 (전/중/후)	- 중점관리대상 개선대책 검토의견 발표 - 의견협의 및 조율에 참여 - 안전전달사항 발표 - 협의체회의록 결과물 검토	
	안전/보건 교육	- 업무분장에 따른 안전교육 및 협력사 교육 참관 - 교육자료/기자재 및 장소 제공 - 안전/보건교육결과물 검토 - 팀원 부재시 신규채용자교육 실시	
	안전/보건 점검	- 일일안전점검 실시(feed back/추가위험요인도출) -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 - 일일안전점검일지 검토 및 상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산업안전관리비 검토	
	건설장비관리	- 점검 및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재	
	안전활동	- 지적사항 취합 검토/조회 시 발표 - 본사안전활동 제도 현장운영실시 - 안전조회 주관 및TBM 참석	
	작업환경관리	- 밀폐공간프로그램/유소견자 관리/근골격계유해인자 조사 운영 및 검토 - 현장 내 식당 근로자 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계획 및 운영 검토	
	비상사태 발생시 업무	- 유도반 반장 - 현장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기타	- 비상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행(년4회) - 월간 안전보건점검의 날 행사실시		

구 분	업무분장		서명
공사팀 이연덕 책임매니저	산안법관련	- 관리감독자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참조)	(서명)
	경영시스템	- 현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활동 참여 -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위험성평가	- 공정 위험성평가표 협의/검토 (feed back/추가위험요인반영) - 비정상 작업 발생시 위험성평가 협의/검토 - 영세 협력사 위험성평가표 작성	
	협의체회의	- 중점관리 대상작업 추가 보완 및 개선 사항 발표 - 의견협의 및 조율에 참여	
	목표추진계획	-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활동시행여부 확인 - 목표달성 성과측정 추진담당업무 :	
	안전보건교육	- 업무분장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협력사교육 참관 -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투입전 (MSDS)취합, 자료제출/교육	
	안전보건점검	- 일일안전보건점검 실시 (feed back/추가위험요인도출) - 추가위험요인 지적사항 조치될 수 있도록 협력사 관리	
	건설장비관리	- 장비관련 문서 취합 및 검토/제출 - 중량물,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검토	
	출력관리	- 공중 근로자 출퇴근 확인 - 유소견근로자 작업관리 확인	
	안전보건활동	- 본사안전보건활동 제도 실시 참여 - 공중 TBM 참석	
	비상사태발생시 업무	- 복구반 > 장비 및 자재 투입	
기타			

구 분	업무분장		서명
<p style="text-align: center;">품질팀 문상국 책임매니저</p>	산안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참조) 	(서명)
	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활동 참여 -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위험성평가표 협의/검토 (feed back/추가위험요인반영) - 영세 협력사 위험성평가표 작성 - 비정상 작업 발생시 위험성평가 협의/검토 	
	협의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대상작업 보완 및 개선 사항 발표 - 의견협의 및 조율에 참여 	
	목표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활동시행여부 확인 - 목표달성 성과측정 추진담당업무 :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협력업체교육 참관 -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투입전 (MSDS)취합. 자료제출/교육 	
	안전보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안전보건점검 실시 (feed back/추가위험요인도출) - 점검결과 추가위험요인 입력/등록관리 - 추가위험요인 지적사항 조치될 수 있도록 협력사관리 	
	건설장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관련 문서 취합 및 검토/제출 - 중량물,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검토 	
	출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근로자 출퇴근 확인 - 유소견근로자 고소/단독작업관리여부 확인 	
	안전보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안전보건활동 제도 실시 참여 - 안전조회 주관 및 TBM 참석 	
	비상사태발생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반 >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 등 팀장 부재기간 팀장 업무대행 	

별첨1. 안전.보건교육 실시 세부추진계획

가. 교육종류 및 시기

- 1)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후 실시(월 2시간)
- 2) 신규 채용자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등은 발생 시 또는 근로자 투입 전 실시
건설근로자: 1시간 이상(위험성평가, 공종별 해당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등)
- 3)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근로자: 4시간
- 4)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반기 8시간/연 16시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안전개선팀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5)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발생 시 작업 투입 전 실시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나. 교육장소

- 1) 안전교육장, 협력사 사무실,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 2) 안전조회장 (TBM실시 등)

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1항 관련)

-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위험성평가표 및 2주간 공정표, 협의체 회의 내용, 사고사례

라. 교육강사(주체)

- 1) 협력업체소장 (해당 공종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
- 2)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자료 지원 및 일반사항 보충교육)
- 3)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교육 시 참관 및 교육)
- 4) 공사팀장 (필요 시)
- 5) 현장소장(필요 시)

마. 관리감독자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1항 관련)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바. 신규근로자 교육 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2)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4)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보건간호에 관한 사항
-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6) 위험성 평가에 의한 개선방안 사항
- 7) 당사 안전보건지침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사. 교육대상자

- 1) 전 근로자

아. 현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 1) 교육강사는 해당 공종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2) 공사담당자는 협력업체소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참관 및 교육
- 3)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안전교육장 또는 그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각종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월1회 실시한다.
- 4) 안전/보건관리자는 교육강사에게 교육내용과 연관이 있는 재해사례, 현장사진, 시청각자료, 등의 교육자료 및 장소를 제공한다.

자. 교육의 결과물

- 1) 교육일지 (증빙사진)
- 2) 참석자 서명지
- 3) 정기교육 양식(단 교육 양식은 한 개의 협력사 첨부)
 - 2주간 공정 및 위험성평가서 협의체 회의결과
 - 교육내용과 연관이 있는 재해사례, 현장사진, 시청각 자료, 법규사항 또는 시공, 작업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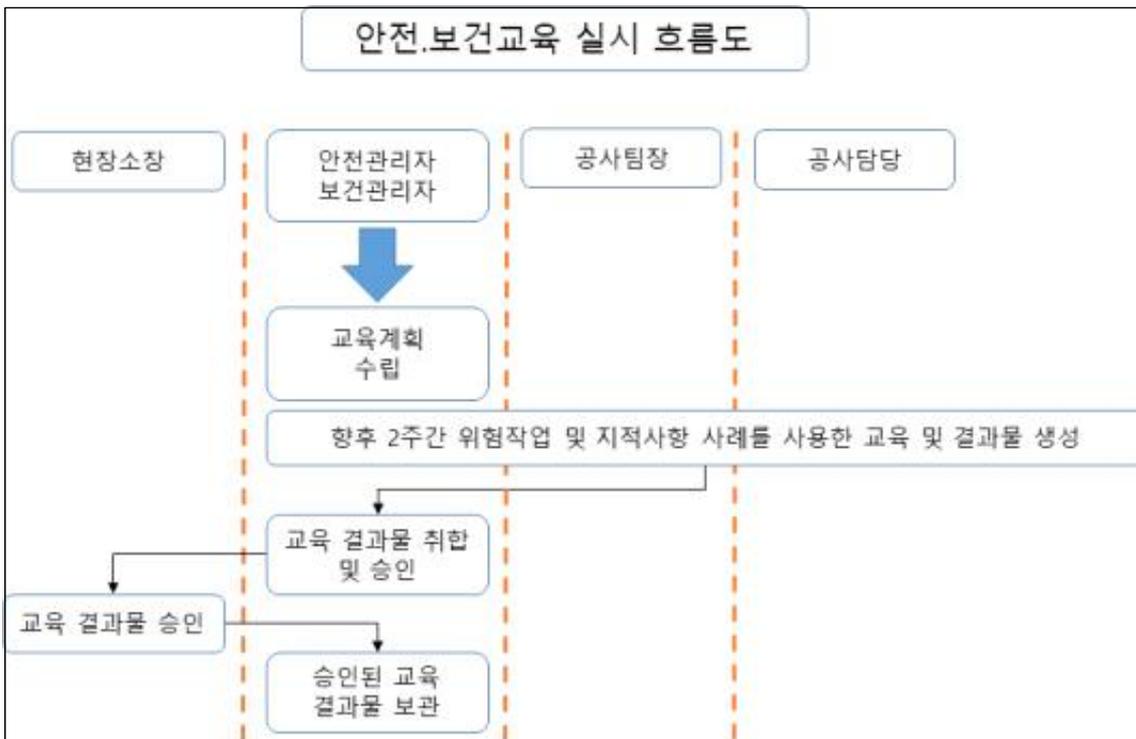
차. 교육결과물 취합

- 1) 안전/보건관리자는 교육결과물을 취합하여 결제 후 공사 종료 시까지 보관

카. 교육결과물 승인

- 1) 안전/보건관리자는 교육결과물을 취합하여 현장소장에게 승인 의뢰

파.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 안전보건교육 흐름도



- 1) 신규, 정기, 특별 교육 결과 보고서 샘플
 - 첨부. 2-1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현 장 명			
교육일자			
교육구분			
교육인원			
교육대상			
강 사 명			
교육시간	시 - 분	시간 분	
교육장소			
교육내용			
첨부파일	1. 교육참석자 명단 2. 사진대지 3. 교재 및 관련 자료		

- 첨부. 2-2 교육참석자 명단

첨부1. 교육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 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 첨부. 2-3 사진대지

첨부2. 사진대지			
내용		장소	
내용		장소	

별첨2. 작업장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가. 일일안전보건점검 실시

- 1) 점검주체 : 현장 업무분장상 일일 안전보건점검(자체안전점검) 대상자
 - (1) 시공담당자 => 시공담당자 부재 시 선임담당자
 - (2)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순찰원) => 저 위험작업 관리
전체공정에(고위험작업포함) 대한 일일점검 이행상태 확인점검
 - (3) 기타 현장 업무분장상 일일 안전보건점검(자체안전점검) 대상자

나. 점검시기

- 1) 일일 위험성평가(9 TO 5회의자료) 검토확인 후 차기 회의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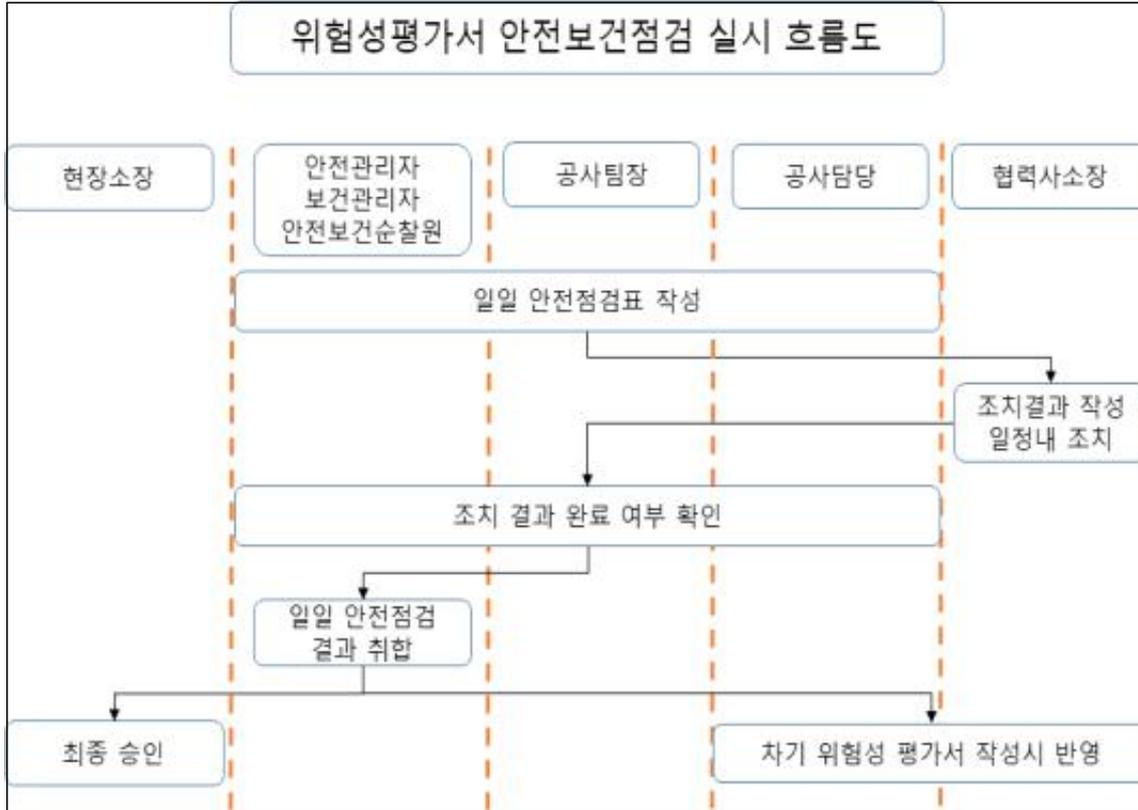
다. 점검실시 내용

- 1) 중점관리대상 개선방안 및 검토(시공,안전,보건)조치내용이 조치담당자에 의해 조치 기한내에 이행여부
 - (1) 중점관리대상의 개선조치의 양호사항
 - (2) 중점관리대상의 개선조치의 불량(개선요구)사항
 - (3) 추가위험요인 도출사항
 - 9 TO 5 회의자료에 기록 후 추가 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서에 등록하여 차기 위험성평가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라. 일일안전보건점검(자체안전점검) 주체자 역할은 아래와 같다

- 1)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9 TO 5회의자료에 작성한다
 - 중점관리사항(A)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위험요인 발생시 현장조치/시정 및 개선일정을 도출한다.
- 2) 기타 위험성 평가에 미 반영된 작업의 중점관리대상 긴급을 요할 경우 추가위험 도출 후 안전/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중점관리대상이 점검표 내용에 포함되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안전/보건관리자는 동종 공종 작업여부에 따라 고 위험작업의 불량사항+추가위험요인 도출 사항을 위험성평가에 반영 feed back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2회이상 불량 시 중점관리대상 투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3) 협력회사 소장은 추가위험요인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9 TO 5 회의자료에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담당자 통보 후 9 TO 5 회의 시 조치결과에 대하여 발표 한다.

마. 무창포항 개발사업 위험성평가서 실시 흐름도



바. 참고사항

1) 위험도 등급 결정방법

위험도 등급	위험도 크기	허용가능 여부	개선 방법
A 등급	매우 높음/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B 등급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C 등급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일상관리)
D 등급	매우 낮음		

2) 위험도 등급의 산정

- (1) 위험성 등급은 발생빈도 및 발생강도를 조합하여 산정한다.
- (2) 등급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발생빈도 발생강도	상	중	하
상	A 등급	A 등급	B 등급
중	A 등급	B 등급	C 등급
하	B 등급	C 등급	D 등급

3) 발생빈도의 결정

- (1)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빈도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빈도'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2) 가능성 단계 '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 (3) 가능성 단계 '중' (가능성이 있다)
 -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 (4) 가능성 단계 '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한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4) 발생강도의 결정

- (1)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강도
 -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2) 중대성 단계 '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휴업재해(1개월 이상인 것)
- (3) 중대성 단계 '중'
 - 휴업재해(1개월 미만인 것), 한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4) 중대성 단계 '하'
 - 휴업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경상)

6) 2주간 위험성평가 회의록

[양식] 2주간 위험성평가 회의록

2주간 위험성평가 회의록

비 재	작성자	검토자 (공사팀장)	검토자 (안전팀장)	승인자

평가차수	차	평가기간	- - - - -	
회의일시	. . .	회의장소	안전교육장	
참석인원	명	참석업체		
주요 위험요인				
업체명	주요 위험요인	개선 대책	개선일정	개선책임자
이전 회차 FEED BACK				
양호사항				
불량사항				
추가 위험요인				
기타 공통사항				
협력업체 건의사항				
기타 전달사항				

사. 안전조회 TBM활동 및 안전시설의 설치

- 1)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은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 시 논의된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에 따라 시공과 연계된 TBM활동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NO	안전활동	세부내용
1	안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시기 : 매 일 ■ 시 간 : 하절기 06시 50분 동절기 07시 30분 (협의체회의시 결정) ■ 장 소 : 안전조회장 ■ 참석대상 : 당일 투입 전체 구성원 ■ 주 관 자 : 관리감독자(원도급+ 협력사 순회실시) ■ 실시내용 : (주관자에 의해 변경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상호간 인사) 나. 국민체조 다. 상호간에 인사 라. 복장 및 보호구 지적확인 마. 공지사항 사. 구호제창
2	T B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시기 : 아침조회 후 작업 시작 전 ■ 시 간 : 5~10분 ■ 실시인원 : 업체별 또는 작업반별 분산 집합 ■ 주 관 자 : 협력회사 소장 또는 작업반장 ■ 참 관 자 : 공종별 공사담당자 ■ T B M자료: 위험성평가표(자료를 보면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품업체(영세한 업체) 투입시 시공담당 작업지시 및 교육 ■ 실시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근로자 건강상태 육안 및 구두 확인 나. 금일 작업내용 + 위험요인 + 개선대책 + 이행사항 전달 다. 전달사항에 따른 상호 협의 라. one point 지적확인
3	안전시설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시기 : ONE CYCLE/2주 기간 ■ 설치기한 : 개선 일정 내 ■ 조치책임 : 협의체 회의시 결정된 자(협력사) ■ 이행확인 : 협의체 회의시 결정된 자(한양) ■ 확인방법 : 일일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설치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도괴 예방 시설 등 나.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유해위험기계기구) 사고 예방 시설 등 다. 감전, 화재, 폭발 사고 예방 시설 등 라. 근로자보건위생 시설 등

(1) 세부사항

아. 건설기계 장비 등 반입, 사용관리

- 1)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할 경우 보험, 자격증등 필요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 사용한다.
- 2) 자재하역 시 안전작업 지침을 통한 업무 Process 적용(현장지침 작성 사용)

(1) 건설장비 관리

NO	안전활동	세부내용
1	건설장비관리 (임대)	<p>■ 건설기계 반입 및 사용시 업무수행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계 반입시 장비점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 관 :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는 서류 미 제출 장비에 대하여 반입금지 조치 2) 절 차 : 협력업체,공사담당 장비관련 첨부서류 취합 (협력업체는 장비 사전검사 실시) → 안전관리자에게 장비반입 1일 전 제출 3) 관련 첨부서류(반입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취급계획서 포함) ② 운전원 면허증 사본(자격면허/유효기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증 불가 ③ 건설기계등록원부(갑)사본 또는 차량 등록증 사본 (장비번호/연식/소유자/검사유효기간/제원/구조변경 확인) 용도확인 : 자가용, 영업용 확인 정기검사 유효기한 경과여부 확인 장비 제조년식 확인 ④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대인2가입/보상한도 적정성 확인) ⑤ 건설기계 제원표 ⑥ 안전인증대상장비는 안전인증서 첨부 ⑦ 협력업체 장비 사전검사 결과서 4) 관리대상 건설기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차량계건설기계 크레인, 향타기,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② 기타 건설현장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M(Tunnel Boring Machine), Shield Machine, Jumbo drill - 해상크레인, 예선 및 기타 선박류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유해위험기계기구류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곤도라, 건설용리프트 5) 건설기계 반입점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안전장치 상태 및 외관상태 점검 - 향타기, 크롤러크레인 등 조립장비는 관리감독자 입회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실시 - 장비점검실명확인증 부착

		<p>6) 건설기계 관리대장 작성 및 허가증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장 첨부서류 확인 완료 장비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발급 <p>2. 건설기계 사용 前 점검</p> <p>1) 주 관 : 관리감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는 장비 사용 前 안전점검 실시 <p>2) 건설기계 사용 전 점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순서 및 방법의 결정 - 지반상태 사전 확인 - 향타기, 크롤러크레인 등 진도위험성이 높은 장비는 두께30mm 이상 철판으로 보강조치 - 장비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각종 안전장치 정상작동상태 점검 -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 - 약천후 시 작업중지조치 -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조치상태 점검 - 체크리스트에 의한 장비점검 실시 - 건설기계 점검 후 장비점검실명확인증 서명날인 <p>3. 건설기계 정비 시 안전조치</p> <p>1) 주 관 : 관리감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한 정비와 사용 완료 후 반출을 위한 해체시 조치 <p>2) 절 차 : 협력사 정비작업 승인요청 → 당사 관리감독자 검토 → 당사 관리감독자 승인 → 협력사 정비작업 시행</p> <p>3) 정비작업시 확인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장소에 “정비 중 “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시 - 협력사 소장 또는 반장 상주 감독실시 - 정비작업 안전절차 준수여부 확인 - 작업중지 및 철수 시 서면으로 관련서류 제출 <p>* 현장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잘 보이는 장소 또는 장비에 작업중지 안내문 부착</p>
--	--	--

(2) 기계/기구관리

2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반입시(신규검사) 나. 사용시(정기검사) ■ 반입신고 : 협력업체 소장 또는 원청 공사담당자(직영공사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 : 당일 작업투입 전 ■ 신규검사 및 합격증 부착 : 한양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 시 : 반출 및 수정 후 재검사 ■ 일일검사 : 사용 전 해당기계 기구 사용자가 직접 점검 ■ 정기검사 및 합격증 부착 : 한양 안전관리자
---	-------------------------	--

		<p style="text-align: right;">: 매월 첫째주 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전)</p> <p style="text-align: center;">- 불합격 시 : 반출 또는 수정 후 재검사</p> <p>■ 관리대상 : 기록관리(전기안전점검일지/전동공구 점검일지) 안전관리자 - 월 점검일지 확인</p> <p>■ 관리대상</p> <p>가. 전기 용접기 및 산소절단기 다. 목재 가공용 등근톱(휴대용포함) 라. 휴대용 그라인더, 전동드릴, 해머드릴 임팩랜치 및 고속절단기 마. 철근 절단, 절곡기등 철근 가공용 기계 기구 바. Wire Rope, 슬링벨트, 샤클등 인양도구(주1회) 사. 공기 압축기(정부 공인기관에서 6개월 1회 이상 자체검사 실시) 자. 크레인 차. 기타 가설 컨테이너 및 전동기구</p> <p>■ 검사주요항목</p> <p>가. 용접기 1) 절연홀더사용/외함접지/전격방지기사용/캡타이어케이블사용등</p> <p>나. 산소절단기 1) 보관방법/압력계이상상태/ 역화 방지기사용 등 다. 목재용등근톱(휴대용 포함) 1) 접촉,반발방지장치이상여부/ 벨트 커버부착/ 장갑 착용 등 라. 휴대용 그라인더 1) 누전차단기부착/ 접지형 코드사용/이중절연구조/보호 덮개설치 등 마. 고속절단기 1) 덮개사용/숫돌회전,충격시험합격여부/측면사용여부/보호구 착용 등 바. Wire Rope, 슬링벨트(태그부착관리) 1) 소선 절단/ 꼬임/ 스트랜드/ 부식등 사. 철근 절단기, 절곡기 1) 외함접지/누전차단기사용/기계보관적정/스위치덮개사용/정리정돈등 자. 가설전기 (안전지침 현장 작성), 분전함 (안전지침 현장 작성) 1) 3P 선 부착상태,누전상태,훼손상태 등 아. 기타 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 기준은 산,안,법의 기준에 따른다.</p>
--	--	---

자. 안전보호구 검정 및 지급 활동실시

1	보호구검정 및 지급	<p>■ 주관자 : 안전/보건관리자</p> <p>■ 시 기 : 보호구 반입시</p> <p>■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적격품의 검정</p> <p>■ 미검정품처리 : 반품조치</p> <p>■ 보호구 검정 및 지급</p> <p>가.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채용자 교육 시 또는 작업내용변경 및 분실 시 작업관련 보호구 반입시 검정한다. (협력사 담당자, 안전관리자,검정실시)</p> <p>나. 안전/보건관리자는 보호구 착용방법을 지도 한다</p> <p>다. 해당 공종별 협력사에서 보호구를 지급하는지 매월 서명확인.</p>
---	------------	---

차. 협력사 의무 안전보건활동

1) 모든 협력업체는 매 작업일 작업 개시 전에 신규근로자와 당일작업 반입기계,장비등을 필히 보고 (일일안전조회 시작전 보고)

2) 협력업체의 보고의무 안전보건활동은 아래의 세부내용으로 실시한다.

NO	안전활동	세부활동
1	근로자출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관 자 : 협력업체 소장 ■ 확인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담당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 출역 시 해당 공종 근로자분이 출퇴근 시 확인을 하였는지 당일 출역 인원과의 대조 확인을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출역 현황을 근거로 현장 무재해 시간을 관리한다. 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보건관련 사항을 작성하고, 출역현황을 근거로 유소견근로자를 관리한다. 라. 공사담당은 협력사 제출한 출력일보 내용을 확인 관리한다.
2	건설장비 반입장비 점검 작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관 자 : 협력업체 안전담당 ■ 수령 및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관리자는 협력업체 안전담당이 제출한 건설장비 관련서류사본을 보관하고 관리한다. ■ 제출 및 점검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기계 : 장비 투입 전 제출 나. 입고전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장비운전원,안전담당) ■ 제출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담당자 협의 후 아침조회 시 또는 1일전 제출 ■ 보고대상 건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차량계 건설기계 : 페이로드,백호우,펌프카 등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덤프트럭,지게차,화물자동차,카고크레인 등 다. 기타 건설현장 장비 ■ 제출서류 : 서류확인후 사용허가증 발부(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운전원 면허증 사본(자격면허/유효기간 확인) 나. 건설기계등록원부(갑)사본 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비번호/연식/소유자/검사유효기간/제원 확인) 다. 장비 검사증(유효기간 확인) 라.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대인2가입) 마. 사업주 미 운전원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유해물질취급 (GHS MS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관 자 : 협력업체 안전/보건담당 ■ 수령 및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협력업체 안전/보건담당이 취급할 유해,화학 물질 현황 파악 후 보건관리자에게 보고 ■ 제출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해물질 : 작업 실시 전 제출 ■ 제출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초 보고 후 분기 사용현황 보고(취급물질 다량사용 시 월1회보고) ■ 운영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질안전보건 자료집 비치 나. 작업시 교육자료 활용 다. 경고표지 부착

MSDS의 분류 - 건설현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질

건설현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 예

- 2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진 물질의 경우 대표 위험성으로 분류 하였으며, 많은 유해, 화학 물질중 일부만 표시한 것임.
-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 물질의 대부분은 그 성상이 고체이든, 액체이든 해당 된다고 보면 됨.

물리적 위험성 물질	건강 유해성 물질	환경 유해성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LPG) • 아세틸렌 • 산소 압축가스 • 이크실제 수제 도료 • 에폭시 • 진나 • 질소 압축가스 • 이산화탄소 압축가스 • 탄산가스 • 솔벤트 • 알리제 • 염색식재 접착제 • WD-40 • 알카 • 솔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가이오인(중장해중) • 윤활유 • 그리이스 • 아크론 • 폴리우레탄계 도료 • 시멘트 • 석고보드 • 유리솜 • 실리콘 • 폼겔봉 • 폼겔폼 • 이소팔트 • 가성소다(수산화 나트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지, 미스트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 카드뮴, 백소, 수은, 시안 • 위험성물질, 핵물질 • 시안, 불소, 구리, 카드뮴 • 농약류, 산업용화학물질, 부산물 • 암모니아, 황화수소 • 다이클로메틸에테르 • 다이클로메틸디실사이드 • 벤젠-톨루엔-에틸렌벤-크실렌 • 폴리클로라테아드비페닐(PCB)

■ 보고대상 유해물질

4	기계·기구관리 반입현황 제출	<p>■ 주 관 자 : 협력업체 안전/보건담당</p> <p>■ 관리자</p> <p>가. 안전관리자는 각 협력업체 안전/보건담당이 제출한 신규반입 기계, 기구에 대하여 신규검사(합격여부)를 실시하고 신규검사필증발급 및 기계, 기구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전기팀과 협업)</p> <p>■ 제출시기 :</p> <p>가. 기계, 기구류 : 작업 투입 전 제출</p> <p>■ 제출방법 :</p> <p>가. 아침조회 시 또는 하루전일FAX 제출</p> <p>■ 보고대상 기계, 기구</p> <p>가. 용접기</p> <p>나. 고압가스 기계기구</p> <p>다. 목재용등근톱(휴대용포함)</p> <p>라. 휴대용 그라인더</p> <p>마. 고속절단기</p> <p>바. Wire Rope, 벨트슬링</p> <p>사. 투광기</p> <p>아. 철근 절단기</p> <p>자. 환기/배기장치(배풍, 송풍, 닥트호스 등)</p>
---	--------------------	--

5	위험성 평가 제출	<p>■ 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따름</p>
---	--------------	-------------------------

6	안전보건교육 실적 제출 (별도교육 시)	<p>■ 주 관 자 : 협력업체소장</p> <p>■ 수령 및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p> <p>■ 제출시기 : 교육실시 후 1~2일내</p> <p>■ 제출서류</p> <p>가. 안전보건교육일지</p> <p>나. 안전보건교육참석 서명지</p> <p>다. 안전보건교육 사진대지 및 교육자료</p>
---	-----------------------------	--

별첨3. 작업장 보건관리 세부추진계획

가. 보건조치 및 건강장해 예방활동

1) 현장소장은 시공 및 업무활동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및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재해예방활동	구 분	내 용	
일반건강진단	주기	(1)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2) 현장직 : 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7조]	
	주관	보건관리자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2) 일반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필요시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2)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근로자 관리	
	관련 양식	- 건강검진(일반) - 취약근로자 관리대장	
배치 전/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배치 전 건강진단 : 해당 업무 배치(투입) 전 (2) 특수건강진단 : 1회 / 12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조]	
	주관	보건관리자	
	내용	(1)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배치 전 건강진단은 직전 6개월 이내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로 대체 가능 (3) 현장투입일로부터 매 12개월 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4) 배치 전/특수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 개선 등 - 취약근로자 선정 및 추적관리 등 (5) 건강진단 결과 기록의 보존	
	관련 양식	- 건강검진(특수) - 취약근로자 관리대장	
취약근로자 관리	주기	(1) 취약근로자 발생 시 월 1회 이상 (2)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주관	보건관리자	
	내용	(1) 신규근로자 채용 시 건강상태 확인 - 과거 및 현재 병력, 혈압, 음주 및 흡연여부 등 (2) 건강상태 및 일반/배치 전/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선정 및 관리	
		건강구분	관리방법
		만 60세 이상 고령자	TBM 시 관리감독자 건강상태 확인 고위험작업 투입 금지
		고혈압자	월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혈압측정, 혈압약 복용여부 체크 등)
C1 / C2		월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D1 / D2	작업내용변경 등 근로제한		
관련 양식	- 취약근로자 관리대장		

재해예방활동	구분	내용						
작업환경측정	주기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변경 시 30일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2) 정기측정: 1회/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0조]						
	주관	보건관리자						
	내용	1. 연간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2.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검토 및 예비조사 실시 3. 신규 또는 정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측정결과의 전파, 작업환경 개선조치 등 - 소음노출기준 초과 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 분진노출기준 초과 시,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수립/시행 5.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고용노동부 보고 (30일 이내) 및 서류보존(3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41조]						
	관련양식	- 작업환경측정						
건강장해 예방 (소음, 진동, 분진)	주기	(1) 건강장해요인 발생 시 (2) 청력·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주관	보건관리자						
	내용	(1) 건강장해요인 - 강렬한 소음 또는 충격소음 / 진동 - 분진 (황사, 미세먼지 포함) (2) 건강장해요인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3) 건강장해요인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 (4) 건강장해요인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관련양식	- 청력·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교육일지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작업환경개선 (흡서기, 흡한기 등)	주기	계절요인 발생 시 (폭염, 한파 등)						
	주관	현장소장, 보건관리자						
	내용	(1) 폭염, 한파 경보/주의보 발생 시 옥외작업 중지 또는 제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관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주의보</td> <td>- 옥외작업 제한 : (폭염) 오후 2시 이후 (한파) 오전 9시 이전 - 작업량 감축 : 평소량의 80% 이하</td> </tr> <tr> <td>경보</td> <td>- 옥외작업 금지 : (폭염) 오후 2시 이후 (한파) 오전 9시 이전 - 작업량 감축 : 평소량의 50% 이하</td> </tr> </tbody> </table> (2)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 - 현장 내 2개소 이상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 설치 - 경보발생 시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체온 유지를 위한 음료 등의 제공 - 폭염 주의보/경보 시 생수, 얼음 등 - 한파 주의보/경보 시 더운 물 등 (4) 온열/한랭질환 예방교육 실시 (5)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장구 지급(쿨토시, 핫팩 등)	구분	관리방법	주의보	- 옥외작업 제한 : (폭염) 오후 2시 이후 (한파) 오전 9시 이전 - 작업량 감축 : 평소량의 80% 이하	경보	- 옥외작업 금지 : (폭염) 오후 2시 이후 (한파) 오전 9시 이전 - 작업량 감축 : 평소량의 50% 이하
	구분	관리방법						
주의보	- 옥외작업 제한 : (폭염) 오후 2시 이후 (한파) 오전 9시 이전 - 작업량 감축 : 평소량의 80% 이하							
경보	- 옥외작업 금지 : (폭염) 오후 2시 이후 (한파) 오전 9시 이전 - 작업량 감축 : 평소량의 50% 이하							
관련양식	- 온열질환 예방 점검 - 한랭질환 예방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재해예방활동	구분	내용											
밀폐공간 관리	주기	(1) 밀폐공간 발생 시											
	주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내용	(1) 밀폐공간 발생 시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밀폐공간 위치/관리방안, 작업계획 수립, 교육훈련 등 (3) 작업 전 적정공기 상태 평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4) 밀폐공간 작업내용의 게시 - 작업일시/기간/내용, 작업자 정보, 공기상태, 비상연락망 등 (5)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 인원점검, 감시인 배치, 대피기구 비치, 보호구 지급 등											
	관련양식	-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주기	(1)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 - 최초 : 착공 후 1년 이내 - 정기 : 1회/3년 - 수시 : 작업내용 변경 발생 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발생 시 (2)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											
	주관	보건관리자											
	내용	(1) 보건관리자는 착공 후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대상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②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과반 이상인 작업 - 방법 ① 작업현황 조사 (작업량, 작업조건 등) ② 단위공정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조사 (근로자 면담) ③ 작업개선 필요여부의 판정 (2) 유해요인조사의 결과 작업개선이 필요한 경우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실시 - 작업조건점수별 개선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작업조건점수</th> <th colspan="2">작업개선</th> </tr> </thead> <tbody> <tr> <td>1 ~ 6</td> <td>허용가능</td> <td>필요에 따라 개선</td> </tr> <tr> <td>8 ~ 15</td> <td rowspan="2">허용불가능</td> <td>계획 수립 후 개선</td> </tr> <tr> <td>16 ~ 25</td> <td>즉시 개선</td> </tr> </tbody> </table> - 작업개선 방법 : 보조기구 지급, 작업방법 변경 등 (3)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내용 : 유해요인, 올바른 작업자세, 기타 예방방법 등	작업조건점수	작업개선		1 ~ 6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8 ~ 15	허용불가능	계획 수립 후 개선	16 ~ 25	즉시 개선
	작업조건점수	작업개선											
1 ~ 6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8 ~ 15	허용불가능	계획 수립 후 개선											
16 ~ 25		즉시 개선											
관련양식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재해예방활동	구분	내용
유해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주기	(1) MSDS 안전교육 - MSDS 대상물질 작업에 근로자 새로 배치 : 신규교육 시 - 새로운 MSDS 대상물질 도입 : 정기교육 시 -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시 : 정기교육 시
	주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내용	(1) 유해화학물질 반입계획 수립 후 보건관리자 제출/승인 - 유해화학물질 반입계획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공사책임자 협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저장구역 지정 후 반입 (3) 위험물저장소 또는 저장구역 내 MSDS 및 소화기 비치 (4) 위험물저장소 및 저장구역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확인 (5)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MSDS 교육 실시 (6) 소분용기 이용 시 해당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부착
	관련 양식	- 유해화학물질 반입계획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 교육일지(다른 교육과 별도보관)
직무 스트레스 관리	주기	(1)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 2년에 1회 이상
	주관	보건관리자
	내용	(1) 대상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 (2)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 마련/시행
	관련 양식	-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 2) 현장소장은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보건조치 및 건강장해 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3) 보건조치 및 건강장해 예방활동, 기타 보건조치, 건강증진활동 등은 보건관리지침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보건조치 및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근로의 금지 및 제한

- 1) 유해 또는 위험 작업에는 필요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2)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금한다.
 - 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전염의 예방조치를 한 때에는 제외)
 - ②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및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 ③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었던 자로서 직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④ 기타 의사의 소견이 직무수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자
 - (2) 건강진단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배치전환 등의 경우에는 업무 변경,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작업중지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 등이 발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1) 주관부서장
 - (2) 현장소장

- (3) 안전/보건관리자
 - (4) 내부심사팀장
 - (5) 근로자
- 2) 작업중지가 결정된 경우 즉시 해당 유해위험요인 또는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3) 현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중지를 해지할 수 있다.
- (1) 유해위험요인의 완전한 제거
 - (2)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결함의 완전한 제거
 -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결함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